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www.scsr.co.kr

Certification Of Earthquake Safety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0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필요성



- ✓ '16년 경주 및 '17년 포항 지진으로 다양한 건축물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지진 안전에 대한 검증 필요성 대두

-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내진보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민간건축물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2019년부터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해주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운영 중

- 이와 더불어,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독려하기 위해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인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건축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함께해주세요! ”

0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개 요



주요 내용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

인증 등급 내진특등급, 내진 I 등급, 내진 II 등급

인증 대상 역사, 학교,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지진인증을 희망하는 모든 건축물(공공·민간)



인증 절차

1 내진성능평가 후 인증신청
(건축주 → 인증기관)

2 인증 심사
(인증기관)

3 인증서·명판발급
(인증기관 → 건축주)

소요 기간

평균 90일 + α

+

평균 80일(심사 60일+ 보완 20일) + α

=

평균 170일

소요 비용

평균 2,000만원

+

평균 600만원

=

평균 2,600만원

※ 소요 기간과 금액은 건축물의 연면적 및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

03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인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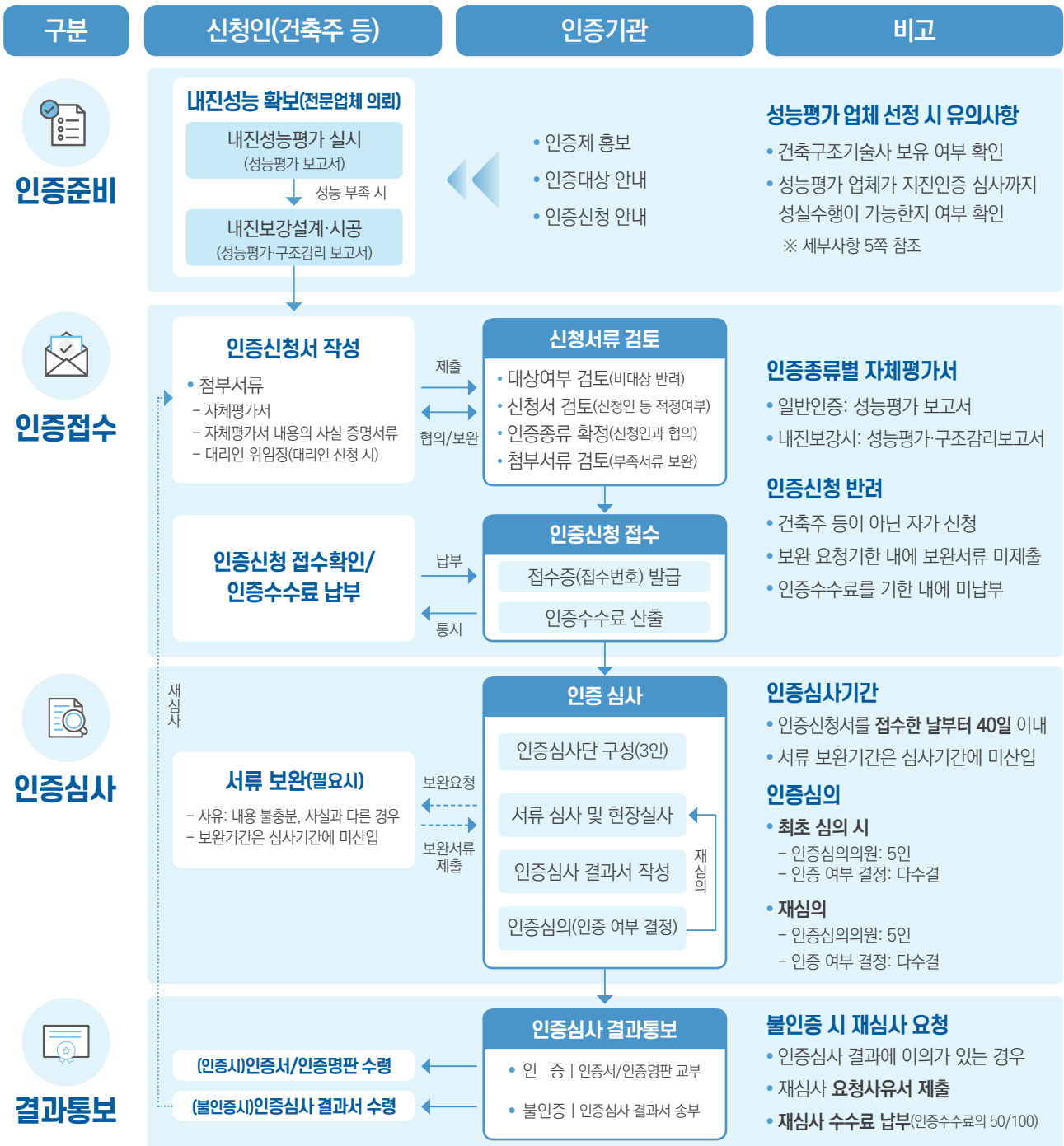


2단계로 추진

1 내진성능평가



2 인증 심사



04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 내역



- 사업 목적**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하고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 및 내진율 제고
 - 사업 내용**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지원
 - 지원 대상** 지진인증을 받고자 희망하는 **민간건축물**(공공 제외)
 - 지원 형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 성능평가비(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인증수수료(최대한도 1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지원율이 상이하어 자부담 비율이 변동될 수 있음(5쪽 참고)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건축물 규모별 지원 예시 (국비 60% 지방비 30% 기준)



주택

연면적 85㎡
주택

구분	내진성능평가	인증 수수료	합계
총액(100%)	1,400만원	200만원	1,600만원
정부지원(90%)	1,260만원	180만원	1,440만원
자부담(10%)	140만원	20만원	160만원



상가

연면적 10,000㎡
상가

구분	내진성능평가	인증 수수료	합계
총액(100%)	3,000만원	500만원	3,500만원
정부지원(90%)	2,700만원	450만원	3,150만원
자부담(10%)	300만원	50만원	350만원



아파트

연면적 20,000㎡
아파트

구분	내진성능평가	인증 수수료	합계
총액(100%)	3,800만원	700만원	4,500만원
정부지원(90%)	2,700만원	630만원	3,330만원
자부담(10%)	1,100만원	70만원	1,170만원






공장

연면적 50,000㎡
(1종 시설) 공장

구분	내진성능평가	인증 수수료	합계
총액(100%)	5,600만원	1,100만원	6,700만원
정부지원(90%)	2,700만원	900만원	3,600만원
자부담(10%)	2,900만원	200만원	3,100만원

※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비용 지원율이 다를 수 있음

0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신청

-  **신청대상** 지진인증을 희망하는 민간 건축물(공공 제외)
-  **신청방법**
 - 과년도 연말~해당연도 연초 지자체별 공고(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게시)
※ 지자체별 공고시기 및 보조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담당부서 사전 문의 필수
 - 해당 지자체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지자체별 절차에 따라 사업 대상자 확정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평가 견적서 등

시도	국고 보조율	지방비 보조율	자부담율	시도	국고 보조율	지방비 보조율	자부담율
서울	60%	30%	10%	강원	60%	30%	10%
부산	60%	30%	10%	충북	60%	30%	10%
대구	60%	40%	0%	충남	60%	30%	10%
인천	60%	40%	0%	전북	60%	30%	10%
광주	60%	30%	10%	전남	60%	15%	25%
대전	60%	40%	0%	경북	60%	40%	0%
울산	60%	30%	10%	경남	60%	30%	10%
세종	60%	30%	10%	제주	60%	30%	10%
경기	60%	30%	10%				

※ 최대 지원한도 : 내진성능평가 3천만원, 인증수수료 1천만원

02 1단계 내진성능평가 실시

- ✓ 내진성능 평가 용역업체 선정

※ 참고사항

①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내진성능평가 업체 선정

→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의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아니어도 수행할 수 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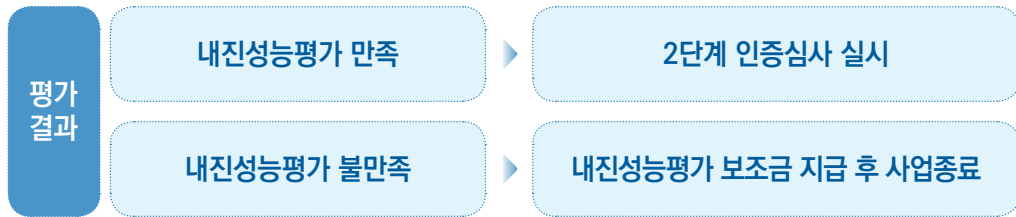
지진 인증은 건축구조기술사의 자체평가서 및 직인이 필요

※ 우수한 내진성능평가 업체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홈페이지에 공개 중

② 용역 과업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까지 포함하여 실시

→ 인증 심사과정에서 보완자료 요청 시 내진성능평가 수행업체가 보완자료를 거절하여 불인증되는 사례가 있어, 용역 과업을 인증심사까지 완료되었을 때 대금지급을 하는 등 **인증심사를 성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완 장치 필요**

✓ 내진성능평가 실시



※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을 실시해야 할 경우, 다중이용 건축물은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직접 지원' 사업에 참여 가능 (8쪽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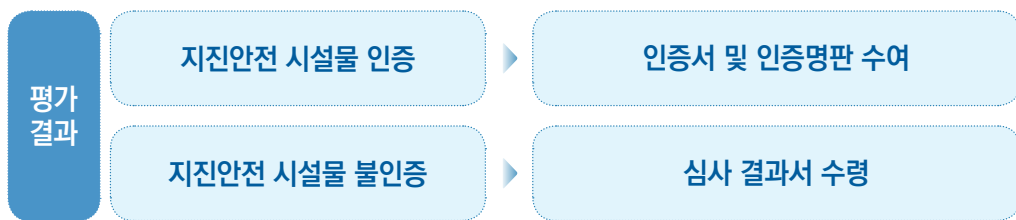
03 2단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심사 실시

✓ 지진인증 심사 신청 및 수수료 납부

※ 신청 시 필요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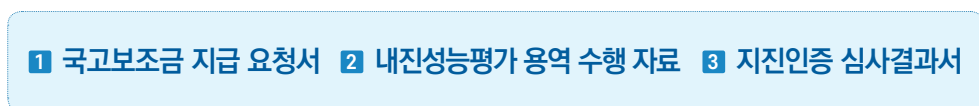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심사



04 인증 지원 사업 보조금 수령 및 사업 종료

✓ 해당 지자체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국고보조금 수령 신청

※ 신청 시 필요서류



※ 시도별 보조금 수령을 위한 필요 서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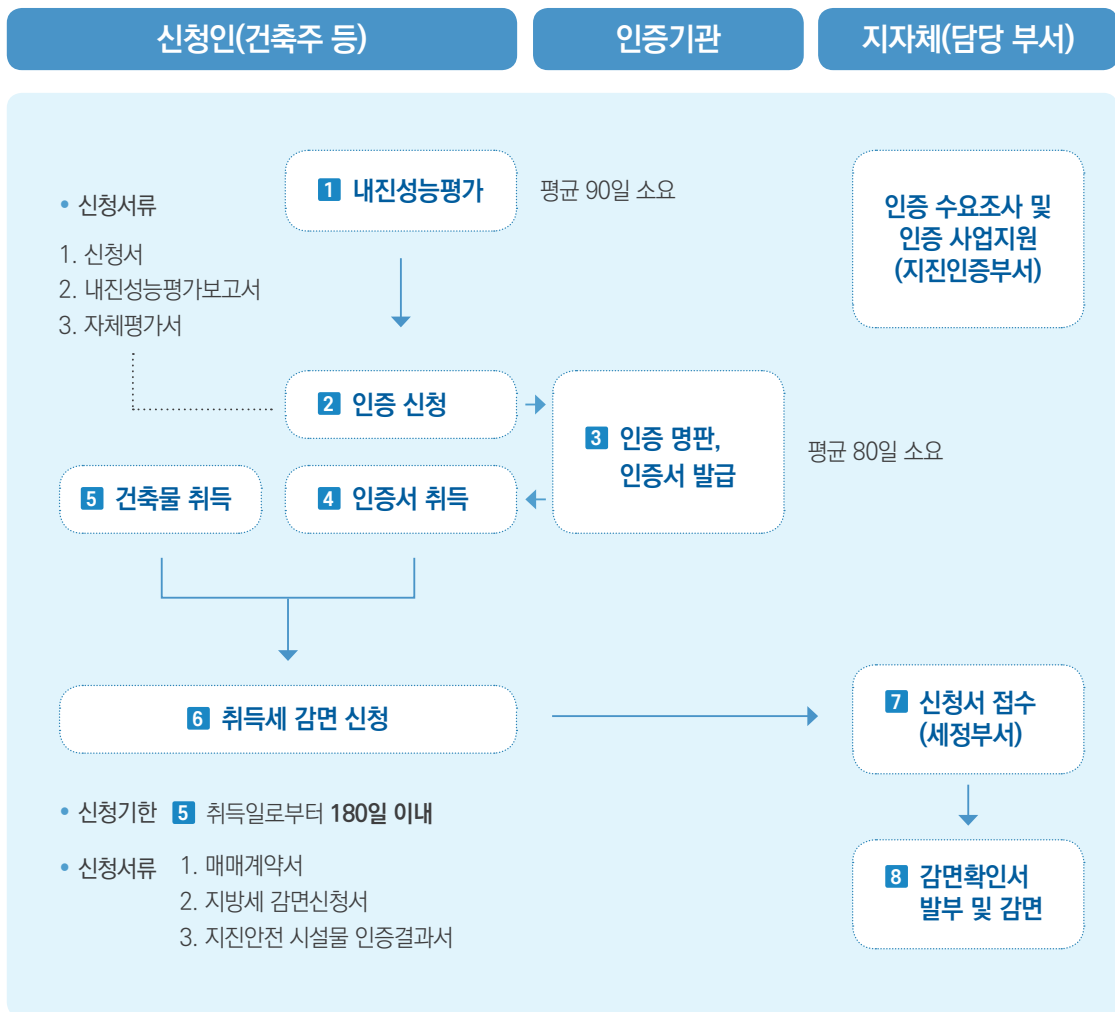
06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인증 혜택



○ 신축 건축물 지진인증 시 취득세 5% 감면

- 🕒 **신청기간** 건축물 취득일로부터 180일 이내
- 📄 **감면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감면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원시취득자*
* 승계받지 아니하고, 처음으로 건축물의 권리를 새로 취득한 자
- 📁 **필요서류** 매매 계약서, 지방세 감면신청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 📋 **감면절차**



※ 건물 사용을 위해 취득세 先 납부 후, 이후 감면액 환급 지원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 진행 중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내진성능 미확보로 나온 경우,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내진보강공사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목적**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 **사업내용**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지원형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 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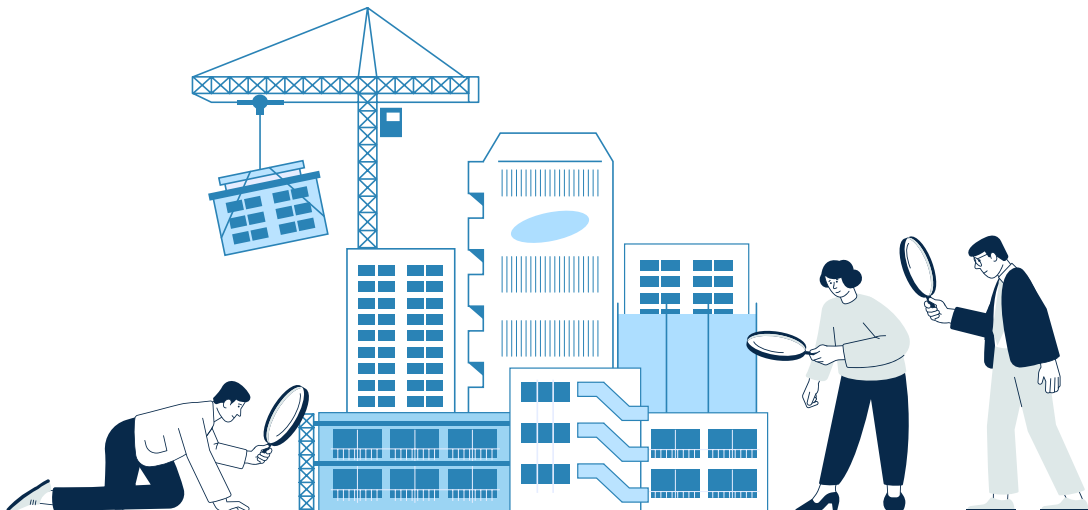


08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 사업 추진절차



- Ⓜ **예산액** 국비 1,467백만원*
 * 30개소 × 489백만원 × 10% (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 ⌚ **사업기간** ~ '23.12.31.
- 👤 **지원형태** 자치단체 자본보조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 지원(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 지방비 분담율은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최소 10% 이상 확보토록 권장
- 🏛️ **교부·관리** 행정안전부
- 👉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 **추진절차** 수요 확보 → 사업실시(선금지급) → 사업완료(잔금지급)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례(건축주 및 관리주체)



신세계백화점 본점 (인증일자: 22.08.12)

신세계 본점은 전철역을 포함하여 유동고객은 물론 근무하는 직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지진에 정말 안전한 건물인지 문의하시는 고객도 종종 있었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이후 고객은 물론 직원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지진인증을 통해 내진성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 기업에는 안전한 건물에 대한 확신을 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세종JMP빌딩 (인증일자: 22.11.16)

기존건축물에 구조보강과 증축을 통하여 튼튼한 건축물로 지어졌으며, 이를 국가에서 인증한 지진안전 시설물 현황판이 건물입구에 설치되어 설계의뢰를 위해 내방하는 건축주에게 구조안전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건축물을 건축사사무소 사옥으로 사용하므로 건축주에게 신뢰와 자부심으로 설계 및 감리를 할 수 있어 앞으로 건축주에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적극 추천할 예정입니다.



세계어린이집 (인증일자: 22.12.02)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웃음과 행복 사랑이 넘치는 곳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통해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받아 아이들, 교사, 학부모 등 만족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으로 더욱 행복한 어린이집이 된 것 같습니다.



가천대 비전타워 (인증일자: 21.12.20)

비전타워는 교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축물로써,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사용하는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비전타워가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받으면서 가천대학교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이번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통하여 사용자들은 지진 안전에 대한 안심을 가질 수 있었고, 건축물의 가치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례(수행업체)



SQ엔지니어링(주)

지난 경주·포항지역의 지진발생 이후 지진의 위험성을 온 국민이 실제적으로 체감하고 사회 전반에 대두됨에 따라,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한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공공시설뿐만 아닌 민간시설의 자발적인 내진성능 확보를 독려하는 시장 활성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은 건축물 내진분야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가 대상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가가 인증심사를 진행하여 인증의 신뢰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가들이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검토할 때 기술자의 고민을 함께하는 개방된 심사절차를 실시하고 있어 용역사 입장에서 좀 더 유연하고 속도감 있게 인증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관련 외신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활성화되어 국내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경주·포항 지진 이후, 공공시설물인 관공서와 학교 등에서는 내진성능 확보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지진의 위험성 및 내진성능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국민들에게 내진보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인증심사를 진행하여 신뢰성이 높고, 내진성능 평가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수집 및 관리되어, 정보 활용이 용이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국민이 생활하는 건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였는지 명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주변 시설물들의 자발적인 내진성능 확보를 독려하는 단초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삼림엔지니어링





○ 인증제도 관련

Q 인증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시공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정보는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시설물 정보관리 시스템(www.fms.or.kr) 조회가 가능하며, 건축구조 기술사 사무소는 각 소재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건축구조기술사 포함 여부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인증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우수업체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공식홈페이지 정보마당 -> 내진성능평가 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내진성능평가 업체 선정 시 권장사항〉

- 1 지진인증 심사까지 성실하게 수행 가능한 내진성능 평가 업체 선정 필요**
- 서류 제출이 불성실한 경우 인증심사가 불가하여 불인증 될 수 있음
- 2 인증신청 시, 건축구조기술사 직인이 필요함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내진성능평가 업체 선정**
- 기술사 보유 업체가 아닐 경우 인증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3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수행한 업체 우선 선정(타 조건이 동일할 경우)**
-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인증 수행경험이 있는 업체 선정 시 원활한 인증심사 수행이 가능

Q 다수 건물을 인증받고자 할 때, 대상 선정 세부 기준이 있나요?

- 인증 신청 대상의 규모와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1개소로 되어 있으면 인증심사는 1개소로 진행됩니다.
※ 건축물대장에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 개별 동으로 신청해야함
- 지진인증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또한 건축물 대장입니다.

○ 인증지원 사업 관련

Q 기존에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보조금은 지진인증을 위한 목적으로, 인증심사까지 마치신 후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건축구조기준 KBC2009 이전 기준에 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실시가 필요하며, 오래전 종료된 과업의 경우 인증기관의 보완요청 등에 성능평가업체의 협조가 가능하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에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니, 인증제에 관심 시 적극 활용 바랍니다.
(국토안전관리원, 055-771-4888)

Q 내진성능평가와 지진인증 시 결과 NG가 났을 경우 비용 지급 가능한가요?

- 내진성능평가 '성능 미확보(NG)' 및 인증심사 '불인증(NG)'의 경우 모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인증 취득을 목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결과에 대한 사유의 적정성, 인증심사를 목적으로 실시하였음 등을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인증심사 결과 NG인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결과 통보를 받은 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Q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심사 국고보조금 한도와 보조율은 각각 얼마인가요?

- '23년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국고 보조율은 60%입니다.
 - 내진성능평가 최대 3천만원의 60%인 1,800만원까지 인증수수료 최대 1천만원의 60%인 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매칭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소비비용은 건축물의 종류, 크기(연면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Q 건물주체가 동일한 다수 건축물을 사업 신청해도 비용자원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 다만, 사업 대상자는 지자체별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 044-205-5182 / hds4145@korea.kr
-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44-205-5199 / ldi0703@korea.kr

○ 인증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지진안전인증팀 ☎ 055-771-4888 / seismiccerti@kalis.or.kr

○ 지자체(접수)

시·도	연락처
서울	02-2133-6988
부산	051-888-2964
대구	053-803-4552
인천	032-440-3369
광주	062-613-2684
대전	042-270-5974
울산	052-229-4085
세종	044-300-3223
경기	031-8008-8442
강원	033-249-3821
충북	043-220-2465
충남	041-635-3254
전북	063-280-4379
전남	061-286-3726
경북	054-880-2367
경남	055-211-2834
제주	064-710-3948